Ⅱ. 생명보험과 자살

1. 생명보험에서 자살의 정의

생명보험에서 정의하는 자살은 일반적 자살적 정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살이란 타인이 아닌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하지만 생명보험에서의 자살은 정신적 기능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일컫는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 심신상실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생명보험상 자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표 Ⅱ-1〉는 각국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정신장애자의 자살을 자살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표 Ⅱ-1〉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

구분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	제외
한국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정신장해자 및 심신상실자의 자살,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자살
독일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모든 행위	미필적 고의, 사형집행, 중과실에 의한 자살
영국/미국	도덕적, 법적 결과에 대한 의식은 없으나, 물리적 결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	정신이상 상태에서의 자살
프랑스	자기의 명예, 재산, 건강과 관련하여 중대한 심리적인 악화로 인해 고의로 자기 자신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자신의 행동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이고 고의 없는 자살
일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사망을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초래한 행위	

자료: 김형기 · 이광호(2004),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삼성금융연구소.

2. 자살에 대한 면책조항

가. 상법

자살에 대한 면책과 관련된 내용은 상법과 생명보험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중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일반적인 면책 사유를 정의한 것으로 보험의 원칙적 목적이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우연적 사고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과 관련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2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중략)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적 의미의 법조항은 생명(인)보험의 경우 손해(물)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자의 의도적 사망(자살)이 유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커 그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 생명보험 표준 약관

생명보험회사의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생명보험표준약관도 상법상에서 상충되는 생명사고면책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동 약관 제17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규정을 하며 상법 제659조6항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보장 개시일부터 2년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며 상법 제732조2항의 의미와 목적을 반영시키고 있다.

3. 면책조항 해외사례

자살에 대한 보험금 면책기간을 각 국가별로 조사하면 〈표 Ⅱ-2〉으로 축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살에 대한 보험금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데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이 없어 모든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벨기에, 그리스 등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1995년대에 들어서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설정한 국가이다. 일본, 독일 등은 비교적 최근 자살면책기간을 조정한 국가로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자살면책조항을 조정해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엄격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표 Ⅱ-2〉 각국의 자살면책기간(년)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벨기에	∞	∞	∞	1	1	1
스웨덴	0	0	0	0	0	0
덴마크	0	0	0	0	0	0
독일	3	3	3	3	3	3
그리스	∞	∞	∞	∞	2	2
일본	1	1	1	1	2	3
미국	주마다 상이함(33개주: 2년, 2개주: 1년, 나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호주	1	1	1	1	1	1
한국	2	2	2	2	2	2

자료: Chen, J., YJ. Choi, and Y. Sawada(2008), "Suicide and Life Insurance", CIRJE Discussion Paper, p. 17.

가. 일본

일본은 상법 및 보험법에서 자살과 관련된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제680조에서 보험금 지급이 필요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1항1에서 '피보험자가 자살, 결투, 기타 범죄, 사형 집행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상법' 중 보험계약편을 분리 독립하여 제정된 '보험법' 제51조에서는 사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법규정상 생명보험사가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약관에는 자살에 대하며 보험금 지급을 면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1930년에서 1940년까지는 1년, 1940년에서 1971년까지는 2년, 1971년부터 1998년까지는 다시 1년으로 정하다가, 1998년 이후부터 다시 2년으로 면책기간을 변경하였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로 일본 내국사들은 2년, American Family 등 외국사들은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1998년 이후 자살자 수가 3만 명이 넘으면서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보험관계자들이 사망보험금이 자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책기간 연장이 자살억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점이 작용하였다.[2] 실제로 13개월째 자살자 수가 계약초년도의 월평균 자살자 수의 약 1.5배였으며, 12개월째보다는 1.7배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3]

이후 2004년 자살하고 받게 되는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는 계약자들이 늘어나고 자살예방 및 보험금 증가를 우려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살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일본생명, 명치안전생명 등에 이어 2004년 10월 제일생명이 3년으로 연장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의 면책기간이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4]

〈그림 Ⅱ-1〉 일본의 자살률 추이와 면책기간 조정 시점

(단위: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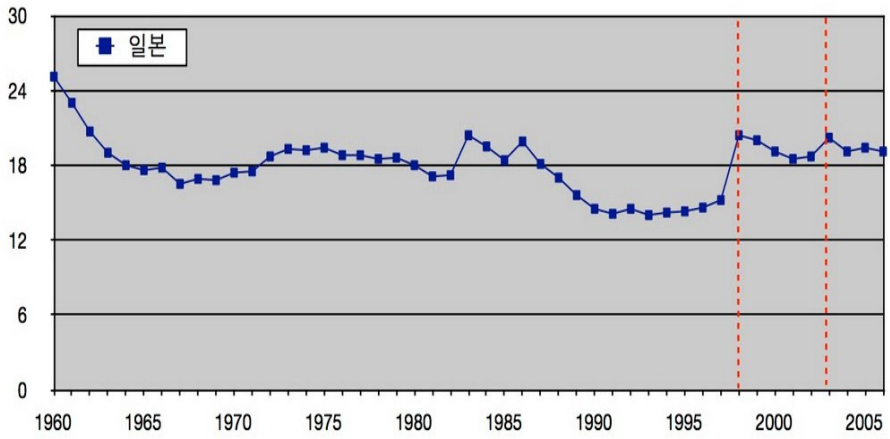

자료: OECD(http://lysander.sourceoecd.org/vl=90058060/cl=11/nw=1/psv/societyatglance2009/08/04/index.htm).

1) 한병규(2010), 재인용.

2) 일본 매일신문(2005. 10. 26).

3) 삼성금융연구소(2004).

4) 일본 매일신문(2005. 10. 26).

〈그림 Ⅱ-1〉은 일본의 자살률 추이와 면책기간 조정을 한 시점을 살펴보면 1년에서 2년으로 면책기간을 늘렸던 1998년 자살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자살률이 감소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생명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들로 1998년 이후 자살률이 조금 감소하였다.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던 시기도 자살률이 다시 증가하였던 시점임을 알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서 자살이 다루어진 시점이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독일

독일은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하여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개별계약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자살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였다. 독일보험계약법(VVG) 제161조에서는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고의 자살 시는 보험자는 면책이며, 3년의 기간은 개별계약에서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에게 3년 이상의 기간을 면책으로 정한 상품들을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치이다.